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789
----------	-------

발의연월일 : 2026. 7. 7.

발 의 자 : 김예지 · 김 건 · 고동진
박덕흠 · 강승규 · 이달희
정성국 · 김상훈 · 최수진
최형두 · 김소희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장애인의 일자리와 경제적 자립을 확대하기 위해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있음.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1인 중증 장애경제인에게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1인 중증 장애경제인에게는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외에도 10%의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과되고 있어 영세한 장애경제인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한 2024년 기준 장애인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1인 중증 장애경제인의 기업 평균 영업이익은 1,450만원으로 전체 장애인기업 평균(3,790만원)보다 현저히 낮아 경영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장애인을 위한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용역을 추가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제21호 신설).

법률 제 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에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장애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 지원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제2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p> <p>1. ~ 20. (생략)</p> <p><u><신 설></u></p> <p>② (생략)</p>	<p>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 ----- -----.</p> <p>1. ~ 20. (현행과 같음)</p> <p><u>21. 장애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u></p> <p>② (현행과 같음)</p>